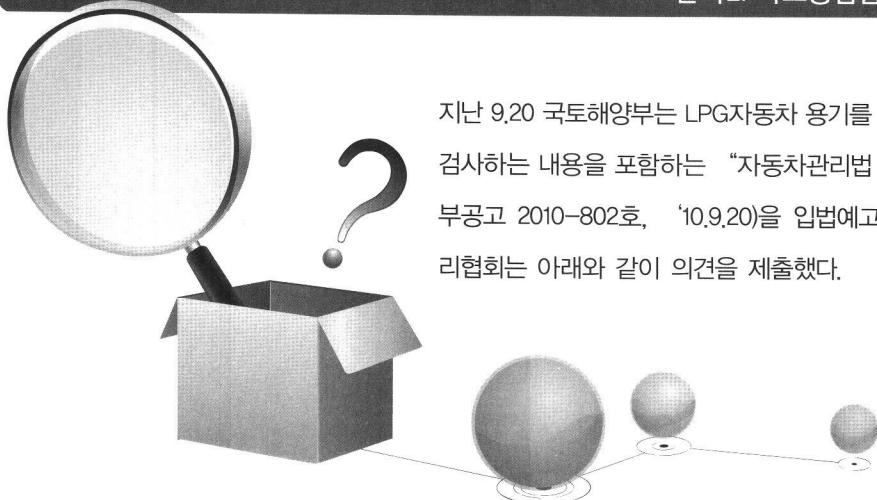
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

한국LPG가스공업협회 부탄사업팀



지난 9.20 국토해양부는 LPG자동차 용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재검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”(국토해양부공고 2010-802호, ‘10.9.20)을 입법예고했다.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.

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

□ 입법예고 내용 중 관련조항

- 제35조의11(내압용기의 재검사) ①내압용기소유자는 제35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제35조의7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 하는 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재검사는 내압용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

□ 검토의견 : 내압용기 중 LPG자동차 용기의 재검사 방법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규정대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폐차 시까지 재검사 않도록 건의

- 현행 LPG자동차 용기관련 재검사 규정(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)에 의하면 LPG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을 첫 번째 재검사 주기로 보고 있어 사실상 폐차 시까지 재검사가 없음

□ 사유

○ 현재 LPG자동차 용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중

- LPG자동차의 안전점검 철저

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(등록)]

운행전 점검 : 운수사업자는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

·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

LPG충전사업자는 LPG자동차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함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4호

① 용기의 고정상태와 용기에서의 가스누출 여부

②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

* LPG충전사업자는 LPG차량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,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작성하

여 2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음

○ LPG자동차 용기는 CNG용기보다 안전성 탁월

- '10.8말 현재 전국 240만대가 넘는 LPG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, 지난 수십년간 자동차용 LPG용기의 폭발에 의한 사고사례 없음

반면, CNG자동차는 전국 약 3만대 보급되었으며, '05년 이후 CNG용기에 의한 사고사례 10여건 발생

- 자동차용 CNG용기와 LPG용기 압력비교

· CNG용기의 압력 : 200~250기압

· LPG용기의 압력 : 5기압 미만

- LPG자동차 용기손상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장착

· 액팽창에 의한 가스누출 및 용기손상 방지를 위한 과충전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최고 충전량의 85%이하만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 없음

○ 재검사 시, 사회적 약자(택시, 장애인 등)의 비용부담 가중

- LPG자동차는 사회적 약자가 사용

·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,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LPG 연료사용을 제한하고 있음

사용제한 : 택시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광주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환자, 렌터카, 경차 등에
만 LPG사용 가능

- 재검사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

· LPG용기 분리 재검사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 : 약 1,896억원

재검사비용 : 1,213억원,

영업용차량(택시, 렌터카 등) 재검사기간 중 영업 손실액 : 683억원

※ 출처 : 국감보도자료, ‘10.10.4 김낙성의원

○ CNG버스사고 등 관련 전문가대책회의 결과, LPG자동차 용기 안전성 입증

-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개최(‘10.8.16)

· 참석자 : 가스기술기준위원회(학계 및 업계 전문가, 한국가스안전공사)

· 회의결과 : CNG자동차 용기제조 및 설치기준 재개정 방향 재조정 및 LPG차는 상대적 안전
하다는 평가와 함께 논외로 함

※ 논의내용은 정부(지경부, 총리실, 사고대책위 등) 전달 키로함

- 가스안전심의위원회 개최(‘10.9.16)

· 참석자 : 가스안전심의위원회(지식경제부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학계,
전문연구소, 업계 전문가 등 10여명)

· 회의결과 : CNG버스용 용기에 대한 재검사 특례기준만 마련

□ 건의 사항

○ 현행관련 규정, LPG자동차 용기의 CNG용기대비 안전성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, 전문가대
책회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

- LPG자동차 용기에 대한 자동차관리법령상 재검사 기준을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규정
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주실 것을 건의

※ 참고 : LPG자동차 재검사 기준
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

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(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
용기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4조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)을 첫 번째 재검사
주기로 한다.